# ’20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

2020. 4.

## 행정지원국

## (민원여권과)

# ’20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◆ 일　시 : 2020. 4. 21.(화) 11:00~

◆ 장　소 : 구청 본관 지하1층 기록관

◆ 참　석

- 9명

◆ 안　건

- 건축과 소관업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

: 여의도 빌딩 조경훼손 처분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관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공개결정에 대한 빌딩 관리인의 제3자 이의신청

◆ 심의결과

- 기각(공개)

: 빌딩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의 일원인 청구인도 해당 내용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공개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‘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’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

## □ 회의록 비공개 사유

**근거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, 6호**

**사유 : 상기 문서 중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내용 및 위촉직 성명이 공개될 경우, 공정한 심의나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우려가 있어**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, 6호에 의해 비공개합니다.

□ 비공개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방법 안내

비공개 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청구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재판단하여 결정합니다.